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경북청년예술촌 준공에 따른 성주생활문화센터 업무 추가

○ 생활문화센터 업무수행 운영 규정 사항 신설

3. 주요내용

가. 성주생활문화센터 업무 및 기능

- 경북청년예술촌 운영 규정 추가(제3조제4호)
- 성주생활문화센터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규정 신설(제3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2. 1. 17. ~ 2. 6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성주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성주생활문화센터 업무 및 기능에 경북청년예술촌 운영 규정을 추가하고, 업무수행에 필요한 별도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제공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